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
------	----

2018. 9. 7.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권영희 의원(찬성위원 12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8.9.7.) 상정, 검토보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권영희 의원)

1. 제안이유

-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도·폐업 시 영업

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빈곤층 전략 위험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지도 증가 및 타·시도로의 전파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근거조항(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의3)

나.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조항(부칙 <제6071호, 2016. 1. 7.> 제2조)을 삭제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효력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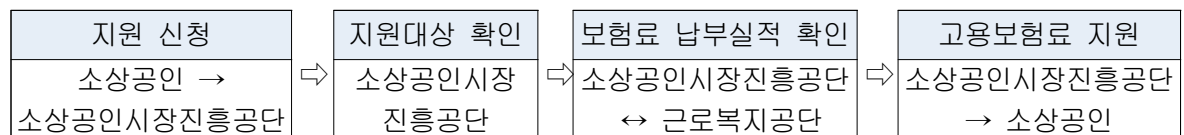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월 보험료	34,650	38,920	43,200	47,470	51,970	56,250	60,525
구직급여	770,000	865,000	960,000	1,055,000	1,155,000	1,250,000	1,345,000

- 가입대상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이고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함.

-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됨.
- 2018년 7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음.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지원금액은 30%에서 50%로 확대되었고 지원기간은 2년임.
- 이에 따라, 서울수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액이 1급과 2급인 소상공인에게 2년간 매월 납부보험료 20%를 지원할 계획임.

<서울시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既 가입한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 中 기준보수액이 1~2등급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20% 지원
(1등급 6,930원, 2등급 7,734원)
- 지원방식 : 매월 납부 보험료의 20%를 납부자에게 환급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부터 2년 간
- 추진방법(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사업 추진(보조금 지원)
- 추진절차



- 총사업비 : 4,211백만원('19년~'22년)

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임.
- 가입대상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되며¹⁾, 월납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함.
-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공제금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 금지, 소득공제 제공,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신규공제 가입자에게 1년간 월 1만원씩 장려금의 추가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6.3.2.~ '18.12.31.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서울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희망장려금 추가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12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월별 보조금 교부
- 지원실적

연 도	연도별	누적 공제가입자수 및 가입률	목표 달성정도
2015년	43,804명	173,126명 (26.8%)	-
2016년	46,046명	219,172명 (33.9%)	목표 34.0% 대비 0.1%p 미달
2017년	60,051명	279,223명 (43.2%)	목표 42.0% 대비 1.2%p 초과

라. 종합의견

-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안 제10조의3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월 보수액이 154만원인 1등급과 173만원인 2등급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기존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소상공인의 가입률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므로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
----------	----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발 의 자 : 권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 이준형, 김정태, 임종국,
김제리, 문장길, 이병도,
한기영, 이동현, 김경영,
김혜련, 문병훈, 오중석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도·폐업 시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빈곤층 전락 위험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지도 증가 및 타·시도로의 전파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근거조항(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의3)

나.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조항(부칙 <제6071호, 2016. 1. 7.> 제2조)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6071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칙 < 제6071호, 2016.1.7. ></p> <p>제2조(유효기간) <u>제10조의2</u>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u>다.</u></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칙 < 제6071호, 2016.1.7. ></p> <p><u><삭제></u></p>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이 삭제됨으로써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소상공인 공제사업 보조금을 계속 지급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

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비용은 서울시 자료 준용
- 소상공인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 비용은 서울시 기추진 사업 준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방법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자료를 기초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8,009,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고용보험료 지원비 (제10조의3)	421,000	842,000	1,263,000	1,685,000	1,685,000	5,896,000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비(부칙제2조)	2,422,620	2,422,620	2,422,620	2,422,620	2,422,620	12,113,100
	소계(b)	2,843,620	3,264,620	3,685,620	4,107,620	4,107,620	18,009,100
□ 총 비용(b-a)		2,843,620	3,264,620	3,685,620	4,107,620	4,107,620	18,009,1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2180-7942
e-mail : intezer@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고용보험료 지원비(제10조의3)
- 보조금 지급비(부칙 제2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18,009,100천원

- 연간비용 ≍ 3,601,820천원

나. 고용보험료 지원비 ≍ 5,896,000천원

- 고용보험료 지원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 ~ 2023년)

- 연간비용 ≍ 1,179,200천원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 지원 추진계획(안)’ 자료 준용

다.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비 ≍ 12,113,100천원

-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 ~ 2023년)

- 연간비용 ≍ 2,422,620천원

※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 준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 계
고용보험료 지원비	421,000	842,000	1,263,000	1,685,000	1,685,000	5,896,000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비	2,422,620	2,422,620	2,422,620	2,422,620	2,422,620	12,113,100
합 계	2,843,620	3,264,620	3,685,620	4,107,620	4,107,620	18,009,100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